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경인북부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3. 03. 06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경고 : 11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사실

○ 주택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소홀 등

가. 주택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소홀

- 1급 남○○ 외 2명은 2022. 5. 9. 차주 (주)○○○홈즈에게 서울시 ○○동 소재 나대지를 담보로 기업시설자금대출 2,560,000천원을 취급하면서, 여신전결품의서상 차주의 자금용도는 근린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으로서 차주가 주택매매업자에 해당하여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담보물 소재지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철거작업이 시작된 것만 확인하고, 멸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(현황 및 공부상 다가구주택)에서 나대지를 담보로 대출비용을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함.

나.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등 소홀

1) 여신심사역 심사 소홀

- 3급 박○○ 외 1명은 2022. 5. 3. 차주 (주)○○○홈즈의 기업시설자금대출을 심사하면서 차주가 주택매매업자에 해당하여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없음에도, 담보물 소재지의 다가구주택이 멸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대지를 담보로 대출비용을 적용한 영업점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에 제출함.

2)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소홀

- 상임이사 한○○ 외 5명은 2022. 5. 3. 차주 (주)○○○홈즈의 기업시설자금대출을 심사하면서 차주가 주택매매업자에 해당하여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없음에도, 담보물 소재지의 다가구주택이 멸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대지를 담보로 대출비용을 적용한 영업점 의견 및 여신심사역 심사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대출을 승인함.

< 관련법규 >

1.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6조의4(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), <별표 2>(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) 제1조(용어의 정의), 제2조의1(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)
2.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45조(승인대출금 업무처리), 제48조의6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, 제171조의2(취급기준)